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1누31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4. 선고 2020구단7408 판결
변 론 종 결	2021. 5. 27.
판 결 선 고	2021. 6. 24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10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380,000원, 지방교육세 204,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5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【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】

○ 3면 12행의 "상혹"을 "상속"으로 고친다.

○ 4면 5행의 "점, 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비록 F 토지 공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G와 합의하여 2014. 8. 27. H 주식회사(이하 'H'이라 한다)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[redacted]구 B 제10층 I호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. 5. 20.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. 8. 29. D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, 』

○ 4면 8, 9행의 "원고와 E, D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"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원고와 E, D이 가족관계에 있는 점, 원고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와 F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점, D이 2014. 9. 30.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, 실제로 이를 감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원고의 주장을 그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5

로 믿기 어렵고,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원고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,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